

# 행정자치부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하동군

관 련 자 하동군 ○○○○과

지방○○○○

내 용

지방○○○○ ○○○은 2014. 9. 5.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기업지원 업무 실무책임자로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 1.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취소 부적정

하동군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2015. 8. 5. (주)○○○ (대표자 ○○○)가 신청한 공장설립<sup>36)</sup>을 위한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15. 9. 25. 지역주민의 공장설립 반대로 인하여 승인된 창업사업계획을 취소하였으며 2015. 12. 14.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창업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재결을 받았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사업계

36) 부지면적(8,454㎡), 건축면적(제조시설 712.63㎡), 업종(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장설립을 위한 창업사업계획 승인 당시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맞게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주)○○○에서 하동군 ○○면 ○○리 산 \*-\*번지에 공장설립을 위하여 2015. 7. 15.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적합하다고 최종 결정되어 2015. 8. 5.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이후 (주)○○○가 공장건축을 추진하는 중에 인근마을 주민들이<sup>37)</sup> 법령에 근거하여 제기하는 정당한 민원이 아닌 “교통문제로 인한 환경문제(진동, 소음, 분진 등)와 차량 통행에 대한 사고위험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요구하였다.

이후 (주)○○○와 마을주민들 간에 지속적인 협의와 설명회를 통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 중에 2015. 9. 3. (주)○○○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전기 인입의 전신주 매설과 관련하여 위 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점·사용허가를 신청하였지만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하는 등 민원처리가 이행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위 관서에서는 주민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창업승인을 취소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면 지역민의 반대를 저감할 수 있고, 100% 청구인이 승소한다.”고 판단하여 (주)○○○에게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협의하였고 (주)○○○에서는 위 승인취소는 위법·부당하다고 제기하면서 위 관서에 ①행정심판 이후의 주민대응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겠다는 사항, ②처분에 명분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상호협조, ③상호의 진심에 대한 확인, ④창업승인의 취소 외에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37) ○○마을, ○○마을, ○○마을 등 3개 마을주민 370명 정도

결과 시까지 유지한다는 내용 등을 제시하여 위 관서에서도 수용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9. 25.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게 되었다.

이후 2015. 10. 5. (주)○○○에서는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 12. 14. 위 관서의 중소기업 창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었다.

## 2.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업무 지연 처리

위 관서에서는 2016. 3. 21. (주)○○○○(대표자 ○○○)이 신청한 공장설립<sup>38)</sup>을 위한 창업사업계획을 같은 해 6. 13. 불승인 처분하였고 같은 해 8. 8. 재신청한 건에 대해 같은 해 11. 4.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이를 수리하였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고, 민원인에게 관계 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수한 민원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고 회신기간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

38) 부지면적(22,095㎡), 건축면적(제조시설 5,017㎡, 부대시설 1,548㎡), 업종(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민원인이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때에는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신고서류를 갖추었다면 서류를 일단 접수하여야 할뿐 아니라 접수 후 신속한 검토를 통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하는 등 접수 거부 및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5. 10. 19. (주)○○○○이 정식적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공장입지기준 확인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0. 26. 사업계획서상 대기, 오염, 수질 등에 대하여 오염배출이 없음으로 기재하여 각 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통보<sup>39)</sup>하였으며, 이후 (주)○○○○은 공장건축을 위한 토목 및 건축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추진하고 다음해인 2016. 1월에 정식적인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위 관서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인근마을 주민들의 동의서를 요구<sup>40)</sup>하면서 접수를 거부하다가 같은 해 3. 21.에서야 정식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에서는 동 민원처리 기한을 2016. 5. 2.까지로 정하고<sup>41)</sup> 같은 해 3. 22. 관련 부서와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실시하고 관련 개별 인허가 사항 및 관련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 및 협의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건축허가 협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대기환경보호법 저촉 여부 등 대부분의 인허가 사항의 검토 및 협의는 같은 해 3. 22.부터 5. 4.까지 완료<sup>42)</sup>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

39) 통보서에는 “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확인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을 명시

40) 하동군에서는 “법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공장부지 인근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공장 건축이 어려울 뿐 아니라 반대민원이 극심한 때에는 공장설립이 난항에 부딪칠 수 있어 먼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사업 전반에 걸쳐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창업사업계획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안내하였으며 이에 귀사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난 뒤 사업계획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한” 사항이라고 함

41) 당시 민원접수서에 의하면 하동군에서는 ‘민원처리기간 70% 단축 프로젝트’ 일환으로 동 민원처리 기한을 2016. 3. 31.로 설정하였음

42) 특히, 환경부서(○○○○과)에서는 2016. 3. 30. 대기·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검토 후 법령 저촉여부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지 않자 같은 해 6. 9.에서야 환경부서(○○○○과)에 대기배출시설 종별산정 검토를 요청<sup>43)</sup>하고 이튿날인 6. 10. 환경부서에서 “동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1종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같은 해 6. 13. 위 관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되어 사업계획서상의 제조법으로는 공장입지가 불가”하다고 창업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그 결과 중소기업 공장설립 등 창업이 지연되어 기업불편 및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다.

## 조치할 사항            하동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부당하게 승인을 취소하거나 접수를 거부하여 지연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43) 하동군에서는 “(주)○○○○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기, 수질 등 환경영향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였기에 환경보호과에서 이전 검토에서 법적 저촉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함